

제291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

목 차

- 제291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발의의안……………2면
- 제291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검토보고서……………80면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5. 7. 2.(수) 10:3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제29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의 및 제출 의안

〈 의 안 목 록 〉	〈 발의 및 제출자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성 주 군 수】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성 주 군 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여노연의원외6인】
4.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우의원외6인】
5.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우의원외6인】
6.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여노연의원외6인】
7. 성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8.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성 주 군 수】
9. 성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성 주 군 수】
10. 벽진면문화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성 주 군 수】



성 주 군 의 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5. 6.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 출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

2) 주 요 내 용

○ 예산규모 : 32,600백만원

. 일반회계 : 25,000백만원

. 특별회계 : 7,600백만원

※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 별첨

3) 첨 부 서 류

○ 2025년도 예산편성기준(기 제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참고자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5. 6.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 출 근 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

2) 주 요 내 용

○ 기금예산규모 : 920백만원
 . 옥외광고발전기금 : 20백만원
 . 재난관리기금 : 150백만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750백만원

※ 기금별 수입·지출 내역 별첨

3) 첨 부 서 류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여노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25. 6.

발의자 : 여노연,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김종식,
장익봉

1. 주 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본의회 의원 중 7명 이내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회부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함.

2. 제안이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참고사항**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25.

발 의 자 : 김성우,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1. 개정이유

지방의회 청렴노력도 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에 책임감 있게 임하도록 유도하며, 회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의 2)

- 출석정지 등 징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 질서유지 위반에 따른 공개회의 경고 사과의 경우도 의정비 감액

3. 조례안 : 붙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생략) <u><신설></u>	제3조의2(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 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 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 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 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 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 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 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 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 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 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 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u><신 설></u>	③ <u>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u>
---------------------------	--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25.

발의자 : 김성우,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1. 개정이유

시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 및 공무원의 부당한 여비 수령을 방지하고, 책임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안 제5조)

-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것에 더해 부정 수령액의 5배를 추가로 징수

3. 조례안 : 붙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여비 부담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u> <u>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u> <u>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u> <u>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u> <u>산하여 징수한다.</u> <u>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u> <u>다음 각 호와 같다.</u> <u>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u> <u>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u> <u>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u> <u>분하는 행위</u>
<u>제5조 (생 략)</u>	<u>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u>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여노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25.

발 의 자 : 여노연,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김종식
장익봉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성주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 권고사항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2025. 1.)에 맞게 규칙을 개정하여 내실 있는 출장제도 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의 공정성 제고(안 제4조)

- 심사위원 공모 선정 및 임기 명시(임기 2년, 연임 1회 제한)

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안 제5조)

- 출국 45일 전 의회 홈페이지 게시

다.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안 제6조)

- 주민의견 수렴 기간 10일

라. 심사 후 계획 변경 시 심사위원회 재개최(안 제9조)

마. 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시 심사결과서 홈페이지 게시(안 제12조)

바. 징계 현황 공개(안 제15조)

3. 규칙안 : 붙임

성주군의회 규칙 제 호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 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 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 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 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 출장 하는 경우
6. 기타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 출장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른 의원의 공무국외 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 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소속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성주군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전에 관하여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을 포함하여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직 등 신분 변동이 있을 때에는 해촉하고 후임 위원을 새로 위촉하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 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성주군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및 제4호의 공무국외 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⑨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⑩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정한다.

제5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
· 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의장은 제5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기준) 공무국외 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인원을 감안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제9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제7조 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 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 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 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적법·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처음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⑤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의한 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등) 허가권자는 공무국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현황의 공개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의회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8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지방의정과 관련성 (국제교류, 초청 목적출장 제외)	1. 정책 연구 및 벤치마킹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인가?		
	2. 방문지의 기관 면담자가 정해진 출장인가?		
	3. 해당 정책을 지역에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3. 사적인 비용 지출 없이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는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 ‘아니오’가 많은 경우 공무국외출장이 부적절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심사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내용							
출장기간	.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명			천 원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명	계	체재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계							

4. 출장효과

5. 출장 주요정보 요약

공무국외출장 주요정보요약		
출장명		
출장자 명단	의원	
	직원	
	기타	
출장기간		
방문국가		
공식방문기관 (접촉자)		
여행경비	체재비	
	준비금	
	항공료	
	차량임차료	
	통역비	
	물품구입	
	기타비용	
	총 계	

비용 상세정보								
총 여행경비 (A+B+C +D+E+F+G)								
체재비 (A=a+b+c)								
	적용환율							
	구분(금액)	급지	호수	상한	일수	인원	산출금액	실지금액
	일비 (a)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O / X]						
	식비 (b)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O / X]						
	숙박비 (c)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O / X]						
준비금 (B)		지급사유:					금액:	
항공료 (C)		이용구간:					금액:	
차량임차료 (D)		이용일수: 이용차량:					금액:	
통역비 (E)		이용내역:					금액:	
기념품 등 물품구입 (F)		구입목적: 물 품 명:					금액:	
기타비용 (G)		지급사유:					금액: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 I.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등
- II.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 III.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 IV.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

-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 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보고서>****○○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2) 속표지 예시**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

3. 첨부자료**○ 출장계획서 및 회의록**

※ 부결되었다가 재의결된 경우 부결된 심사위의 회의록도 포함

○ 실제 출장 수행 출장 주요정보 요약(별지 제1호 서식의 5.활용)

※ 출장자 취소, 현지 일정변경 등에 따른 출장, 비용 변동을 반영

○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시 참고사항**○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

※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 합동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개별 의원별 보고서를 포함

성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일자 : 2025년 6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 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재정안정화계정 사용 한도 변경 및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 운용의 합리성 및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 가. 재정안정화계정 사용 한도 변경(안 제4조)
- 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 관리 의무 명시(안 제5조)
- 다.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심의 포함(안 제7조)
- 라. 심의내역 및 금융기관 예치현황 관리 강화(안 제7조)
- 마. 심의위원회 별도 구성 및 운영(안 제8조 ~ 9조)
- 바.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12조)

(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 → (개정) 2030년 12월 31일까지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붙임 참조)
- 다. 기 타
 - 1) 입법예고 : 2025. 5. 22. ~ 6. 11.(20일간)
 - 2) 규제심사 : 완료(2025. 5. 21.)
 - 3) 성별영향평가 : 완료(2025. 5. 16.)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본문 중 “90퍼센트”를 “70퍼센트”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기금의 관리·운용)”을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기금을”을 “통합기금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통합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기금의 운용심의)”를 “(통합기금의 운용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금의”를 “통합기금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기금운용계획”을 “통합기금운용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금운용”을 “통합기금운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중전의 제4호) 중 “기금”을 “통합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 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각종 기금의 기금운용관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10조(종전의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통합기금”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9조) 중 “사항은 「성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및”을 “사항은”으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 ③ (생략) ④ 한 회계연도에 직전 회계연도 말 적립 총액의 <u>90퍼센트</u> 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70퍼센트</u> ----- ----- . ----- ----- .
제5조(<u>기금의 관리·운용</u>)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5조(<u>통합기금의 관리·운용</u>) ① <u>통합기금을</u> ----- ----- ----- . ② <u>통합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u>
제7조(<u>기금의 운용심의</u>)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 <u>심의위원회</u> ”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u>기금운용계획</u> 의 수립 및 결산 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u>기금운용</u> 의 성과분석에 관한	제7조(<u>통합기금의 운용심의</u>) ① <u>통합기금의</u> ----- ----- ----- ----- . ② ----- ----- . 1. <u>통합기금운용계획</u> ----- ----- 2. <u>통합기금운용</u> -----

사항

3. (생략)

<신설>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성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성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에서 이를 대행한다.

<신설>

<신설>

3. (현행과 같음)

4.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5. ----- 통합기금----

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 사항 등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신 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각종 기금의 기금운용관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

제8조(회계공무원) ① <u>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u> 1. · 2. (생략) ② (생략)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및 「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준속기한) <u>기금의 준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	<u>원장이 소집한다.</u> ② <u>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③ <u>위원장은 심의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u> 제10조(회계공무원) ① <u>통합기금</u>----- -----.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 ----- <u>사항은</u>----- ----- -----. 제12조(준속기한) <u>통합기금의 준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
--	--

성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다. 미첨부 사유

해당 조례 일부개정 시 비용추계 사유가 없음에 따라,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라. 작성자

기획예산실 예산팀장

참고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5년 6월 일
제출자 : 성주군수

1. 제안 근거

- 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다.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 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항

2. 주요 사업

- 가. 「성주3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취득

1) 목적 및 용도

-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2) 사업기간

- 2025. 5월 ~ 2028. 12월

3) 소요예산

- 27,787,196천원(매입비 / 군비 100% / 특별회계)

4) 사업규모

- 토지 ; 성주읍 학산리 51 외 233필지 464,259m²
- 지장물 : 성주읍 학산리 53 건물 외 3,003m²

5) 기준가격명세

(단위 : m² , 천원)

연번	구분	소재지	지적	기준가격	가점평가	비고
	소계		467,262	7,210,857	27,787,196	
1	토지	성주읍 학산리 51 외 233필지	464,259	6,816,609	27,183,812	취득대상 재산목록 참조
2	지장물	성주읍 학사리 53 건물 외	3,003	394,248	604,384	

6) 계약방법

- 협의취득 및 수용재결

7) 추진현황 및 계획

- 2025. 5.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
- 2025. 7.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상정
- 2025. 9. : 감정평가 실시
- 2025. 10. : 협의보상 및 보상금 지급
- 2026. 9. : 산업단지 조성공사 계약 및 착공
- 2028. 12. : 사업 준공 및 준공인가 고시

나. 「초전면 어울림복합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

1) 목적 및 용도

- 복합타운 건립 및 경관정비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정주민족도 향상

2) 사업기간

- 2024. 1월 ~ 2028. 12월

3) 소요예산

- 20,923,404천원(매입비 / 국비 50%, 도비 5%, 군비 45% / 일반회계)

4) 사업규모

- 토지 : 초전면 대장리 688-3 외 14필지 8,509m²
- 건물(신축) : 초전면 대장리 689-1 3,814m²

5) 기준가격명세

(단위 : m² , 천원)

구 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기준가격	가감정가	비고
토지	계	15필지		8,509	1,727,000	5,183,404	
1	초전면 대장리	689-1	답	504	92,000	292,320	복합타운 건립 (5,815m ²)
2	초전면 대장리	689-2	답	1,367	250,000	792,860	
3	초전면 대장리	689-3	답	1,269	232,000	736,020	
4	초전면 대장리	690-1	답	562	4,000	40,020	
5	초전면 대장리	690-4	답	932	129,000	393,400	
6	초전면 대장리	690-8	답	69	202,000	140,580	
7	초전면 대장리	690-11	답	847	193,000	577,840	
8	초전면 대장리	691-4	답	265	51,000	491,260	
9	초전면 대장리	688-3	답	2,096	455,000	1,215,680	경관정비 (2,694m ²)
10	초전면 대장리	584-19	대	159	36,000	159,000	
11	초전면 대장리	584-20	대	122	27,000	111,300	
12	초전면 대장리	584-24	답	13	1,000	85,400	
13	초전면 대장리	585-4	대	73	15,000	89,084	
14	초전면 대장리	585-5	답	175	36,000	7,540	
15	초전면 대장리	585-7	답	56	4,000	51,100	
건물	계	1필지		3,814	15,740,000		신축
1	초전면 대장리	689-1		3,814	15,740,000		복합타운 (지상3층)

6) 계약방법

- 토지-협의취득, 건물-공개경쟁입찰(설계공모)

7) 추진현황 및 계획

- 2025. 6.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
- 2025. 7.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상정
- 2025. 8. : 감정평가 및 보상
- 2025. 9. : 기본 및 실시설계(행정절차 이행)
- 2026. 11. : 공사착공
- 2028. 12. : 공사준공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illegible]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취득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소계	267건	467,262	7,210,857		성주3일반산업단지	
1	답	성주읍 학산리 51	473	12,534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	답	성주읍 학산리 52	222	5,883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3	잡	성주읍 학산리 53	1,100	34,870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4	답	성주읍 학산리 53-1	864	22,896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5	답	성주읍 학산리 54-1	21	978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6	답	성주읍 학산리 54-2	39	1,817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7	전	성주읍 학산리 55	2,013	46,299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8	전	성주읍 학산리 56	2,245	48,716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9	도	성주읍 학산리 56-1	63	1,896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0	답	성주읍 학산리 57	1,406	40,071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1	답	성주읍 학산리 58	2,147	61,189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2	답	성주읍 학산리 59	2,737	78,004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3	답	성주읍 학산리 60	669	19,066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4	답	성주읍 학산리 60-1	2,301	65,578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5	제	성주읍 학산리 61-3	26	782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6	전	성주읍 학산리 62-1	572	15,158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7	제	성주읍 학산리 62-2	73	2,197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8	답	성주읍 학산리 63	3,049	86,896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9	답	성주읍 학산리 64	2,885	82,222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0	답	성주읍 학산리 65	2,367	67,459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1	답	성주읍 학산리 66	2,084	59,394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2	답	성주읍 학산리 72	2,078	62,547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3	답	성주읍 학산리 75	2,019	57,541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4	답	성주읍 학산리 76	2,139	60,961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5	답	성주읍 학산리 77	2,873	81,880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6	전	성주읍 학산리 84	536	12,864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7	전	성주읍 학산리 85	2,284	49,562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8	전	성주읍 학산리 86	341	8,184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9	전	성주읍 학산리 87	387	8,901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30	임	성주읍 학산리 88	1,508	6,740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31	임	성주읍 학산리 88-1	42	186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32	임	성주읍 학산리 88-2	106	471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33	묘	성주읍 학산리 89	565	2,429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34	대	성주읍 학산리 90	645	35,604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35	답	성주읍 학산리 91-1	465	17,205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36	답	성주읍 학산리 91-2	1,860	62,868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37	전	성주읍 학산리 91-3	1,545	50,830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38	답	성주읍 학산리 91-9	15	148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39	답	성주읍 학산리 91-10	13	129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40	답	성주읍 학산리 91-11	14	137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41	임	성주읍 학산리 97-2	1,271	5,617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42	임	성주읍 학산리 97-5	318	1,405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43	전	성주읍 학산리 98-1	496	11,408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44	임	성주읍 학산리 98-2	25,468	110,531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45	임	성주읍 학산리 98-3	10,377	45,866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46	전	성주읍 학산리 608-1	2,357	54,211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47	임	성주읍 학산리 608-2	5,789	30,565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48	임	성주읍 학산리 608-3	95	501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49	전	성주읍 학산리 619-2	290	9,019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50	묘	성주읍 학산리 620-1	503	2,414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51	전	성주읍 학산리 620-2	1,362	31,326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52	전	성주읍 학산리 620-3	158	3,792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53	전	성주읍 학산리 620-4	1,429	32,867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54	전	성주읍 학산리 621-1	1,458	45,343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55	묘	성주읍 학산리 621-2	678	21,967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56	전	성주읍 학산리 622	540	16,794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57	전	성주읍 학산리 627-1	650	20,215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58	전	성주읍 학산리 627-2	734	22,827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59	전	성주읍 학산리 627-3	1,322	41,114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60	전	성주읍 학산리 627-4	777	24,164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61	전	성주읍 학산리 651	2,044	67,247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62	임	성주읍 학산리 653-1	16,475	86,988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63	전	성주읍 학산리 653-2	1,329	43,724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64	전	성주읍 학산리 653-3	1,342	44,151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65	임	성주읍 학산리 653-4	5,779	32,246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66	임	성주읍 학산리 653-6	524	2,363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67	임	성주읍 학산리 653-7	1,527	6,886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68	임	성주읍 학산리 653-8	557	2,512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69	전	성주읍 학산리 654-1	613	20,964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70	임	성주읍 학산리 654-2	1,150	5,807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71	전	성주읍 학산리 655	288	6,912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72	전	성주읍 학산리 656-1	2,890	69,360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73	묘	성주읍 학산리 657	255	6,120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74	전	성주읍 학산리 658-1	1,570	37,680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75	전	성주읍 학산리 658-2	1,815	43,560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76	전	성주읍 학산리 659	1,828	43,872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77	전	성주읍 학산리 660	1,613	38,712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78	전	성주읍 학산리 661-1	4,711	113,064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79	전	성주읍 학산리 661-3	1,841	42,343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80	묘	성주읍 학산리 662-1	255	1,096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81	전	성주읍 학산리 662-2	360	8,280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82	답	성주읍 학산리 663-1	314	7,159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83	전	성주읍 학산리 663-2	1,570	36,110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84	임	성주읍 학산리 664	146	570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85	전	성주읍 학산리 665	731	16,813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86	전	성주읍 학산리 666	2,747	62,631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87	전	성주읍 학산리 667	1,309	30,107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88	전	성주읍 학산리 668	1,488	34,224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89	전	성주읍 학산리 668-1	1,595	36,685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90	전	성주읍 학산리 668-2	1,787	41,101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91	전	성주읍 학산리 668-3	271	6,504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92	전	성주읍 학산리 668-4	470	10,810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93	전	성주읍 학산리 668-5	232	5,568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94	전	성주읍 학산리 668-6	253	5,819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95	전	성주읍 학산리 668-7	50	1,200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96	전	성주읍 학산리 669	175	4,025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97	답	성주읍 학산리 671-1	274	7,041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98	답	성주읍 학산리 671-2	88	3,291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99	답	성주읍 학산리 671-3	107	2,749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00	답	성주읍 학산리 671-4	73	2,730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01	답	성주읍 학산리 672	11,529	262,861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02	유	성주읍 학산리 673-1	282	6,768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03	전	성주읍 학산리 673-2	1,469	33,787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04	유	성주읍 학산리 673-3	118	2,832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05	전	성주읍 학산리 673-4	323	7,752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06	답	성주읍 학산리 676-2	2,503	64,327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07	답	성주읍 학산리 676-3	117	3,006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08	답	성주읍 학산리 676-4	604	15,522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09	전	성주읍 학산리 677	638	14,674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10	전	성주읍 학산리 677-1	256	5,888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11	전	성주읍 학산리 677-2	98	2,254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12	전	성주읍 학산리 678-1	1,314	30,222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13	전	성주읍 학산리 678-2	1,289	29,647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14	전	성주읍 학산리 678-3	1,610	37,030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15	전	성주읍 학산리 678-4	1,981	45,563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16	전	성주읍 학산리 678-5	29	696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17	전	성주읍 학산리 678-6	9	216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18	전	성주읍 학산리 678-7	73	1752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19	전	성주읍 학산리 678-8	128	3,072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20	전	성주읍 학산리 679	1,545	35,535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21	전	성주읍 학산리 679-1	946	21,758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22	전	성주읍 학산리 679-2	813	18,699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23	전	성주읍 학산리 679-3	382	8,786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24	전	성주읍 학산리 679-4	121	2,783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25	전	성주읍 학산리 679-5	160	3,840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26	전	성주읍 학산리 680	893	20,539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27	임	성주읍 학산리 681	546	2,440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28	임	성주읍 학산리 682	238	1,073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29	전	성주읍 학산리 683	436	10,028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30	전	성주읍 학산리 684	1,755	40,365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31	전	성주읍 학산리 685	793	13,718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32	전	성주읍 학산리 818-2	6,116	162,074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33	잡	성주읍 학산리 818-3	807	27,357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34	대	성주읍 학산리 818-4	916	32,701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35	전	성주읍 학산리 818-5	393	10,414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36	답	성주읍 학산리 818-6	846	22,419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37	전	성주읍 학산리 818-7	2,871	76,081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38	전	성주읍 학산리 818-8	237	6,280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39	전	성주읍 학산리 818-9	1,422	37,683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40	전	성주읍 학산리 818-10	1,558	41,287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41	전	성주읍 학산리 818-12	238	6,307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42	전	성주읍 학산리 818-13	251	6,651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43	전	성주읍 학산리 818-18	1,193	31,614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44	임	성주읍 학산리 산44	29,356	65,757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45	임	성주읍 학산리 산47	595	1,725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46	임	성주읍 학산리 산49	10,580	22,641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47	임	성주읍 학산리 산49-1	27,083	89,103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48	임	성주읍 학산리 산49-2	2,456	7,122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49	임	성주읍 학산리 산49-3	51	147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50	임	성주읍 학산리 산49-4	86	249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51	임	성주읍 학산리 산50	5,954	19,826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52	임	성주읍 학산리 산50-1	219	569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53	임	성주읍 학산리 산50-2	356	1,032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54	대	월항면 보암리 288	620	22,754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55	답	월항면 보암리 288-2	558	12,945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56	도	월항면 보암리 288-3	283	2,272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57	답	월항면 보암리 288-4	167	3,874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58	답	월항면 보암리 289-1	1,220	26,108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59	구	월항면 보암리 289-2	83	2,041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60	답	월항면 보암리 290-1	2,011	49,671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61	구	월항면 보암리 290-2	46	1,131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62	목	월항면 보암리 291-1	613	16,244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63	답	월항면 보암리 291-2	1,316	32,900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64	전	월항면 보암리 291-3	4,105	98,520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65	임	월항면 보암리 291-4	372	9,262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66	전	월항면 보암리 291-5	2,784	66,816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67	전	월항면 보암리 292	2,859	70,617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68	전	월항면 보암리 292-1	189	4,668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69	구	월항면 보암리 293-1	109	705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70	제	월항면 보암리 293-2	641	15,768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71	답	월항면 보암리 293-3	853	18,680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72	전	월항면 보암리 293-4	1,302	28,513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73	전	월항면 보암리 293-5	707	15,483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74	전	월항면 보암리 293-6	717	15,702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75	전	월항면 보암리 293-7	1,987	43,515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76	구	월항면 보암리 294-1	109	2,681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77	답	월항면 보암리 294-2	879	19,250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78	답	월항면 보암리 294-3	1,554	34,032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79	답	월항면 보암리 294-4	4,294	94,038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80	답	월항면 보암리 294-5	1,511	33,090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81	전	월항면 보암리 297	7,088	131,836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82	전	월항면 보암리 298	2,053	38,185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83	답	월항면 보암리 299	1,388	25,816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84	전	월항면 보암리 300	330	5,808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85	전	월항면 보암리 300-1	2,368	41,676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86	전	월항면 보암리 301	2,192	38,579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87	전	월항면 보암리 302	1,653	29,092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88	전	월항면 보암리 303	1,022	17,987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89	전	월항면 보암리 304	3,117	43,949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90	임	월항면 보암리 310-1	300	1,434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91	목	월항면 보암리 913-2	735	18,522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92	잡	월항면 보암리 913-3	1,243	36,295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93	전	월항면 보암리 913-4	1,242	30,429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94	전	월항면 보암리 913-5	983	24,083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95	답	월항면 보암리 913-6	608	14,896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96	전	월항면 보암리 913-12	5,819	146,638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97	전	월항면 보암리 913-18	917	22,466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98	전	월항면 보암리 913-27	6,944	170,128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199	임	월항면 보암리 산43	2,741	3,261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00	임	월항면 보암리 산44	2,378	2,829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01	임	월항면 보암리 산45	17,192	20,286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02	임	월항면 보암리 산46	11,901	14,162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03	임	월항면 보암리 산47	14,678	23,044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04	전	월항면 용각리 1308-2	846	21,319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05	전	월항면 용각리 1308-3	1,580	39,974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06	전	월항면 용각리 1308-4	2,582	65,324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07	전	월항면 용각리 1308-5	1,034	25,333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208	전	월항면 용각리 1308-7	3,587	87,881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09	잡	월항면 용각리 1308-8	1,184	31,612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10	전	월항면 용각리 1308-9	8,007	196,171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11	전	월항면 용각리 1308-10	4,337	109,726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12	답	월항면 용각리 1308-11	188	4,756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13	전	월항면 용각리 1308-15	2,079	49,896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14	답	월항면 용각리 1308-17	1,415	31,979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15	전	월항면 용각리 1308-18	1,398	35,369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16	전	월항면 용각리 1308-24	1,448	30,987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17	전	월항면 용각리 1308-30	1,700	41,650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18	전	월항면 용각리 1308-31	1,871	45,839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19	유	성주읍 학산리 670	99	238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무상 귀속
220	천	성주읍 학산리 818-11	570	23,177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무상 귀속
221	구	성주읍 학산리 821-10	554	-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무상 귀속
222	도	성주읍 학산리 824	208	6,260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무상 귀속
223	도	성주읍 학산리 825	1,855	-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무상 귀속
224	구	성주읍 학산리 826	4,206	-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무상 귀속
225	구	성주읍 학산리 827	1,980	-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무상 귀속
226	도	성주읍 학산리 827-1	1,630	-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무상 귀속
227	구	성주읍 학산리 827-2	2,046	-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무상 귀속
228	천	월항면 보암리 913-16	15	4,920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무상 귀속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229	구	월항면 보암리 920-1	1,211	-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무상 귀속
230	천	월항면 용각리 1308-12	1,865	45,879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무상 귀속
231	천	월항면 용각리 1308-19	179	4,403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무상 귀속
232	전	월항면 용각리 1308-20	311	7,868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무상 귀속
233	전	월항면 용각리 1308-22	112	2,833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무상 귀속
234	천	월항면 용각리 1308-28	1,490	-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무상 귀속
235	경량철골 구조	성주읍 학산리 53	99	20,493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36	경량철골 구조	성주읍 학산리 53	99	20,493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37	철파이프 조	성주읍 학산리 85	77	13,475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38	철파이프 조	성주읍 학산리 85	35	6,125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39	철파이프 조	성주읍 학산리 85	35	6,125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40	샌드위치 판넬	성주읍 학산리 91-1	13.5	4,630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41	철파이프 조	성주읍 학산리 91-1	72	300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42	시멘트블 록조	성주읍 학산리 653-8	100.75	12,593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43	시멘트블 록조	성주읍 학산리 653-8	25.4	254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44	판넬	성주읍 학산리 654-1	18	500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45	흙벽돌조	성주읍 학산리 818-3	92.15	59,344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46	황토 벽돌조	성주읍 학산리 818-3	60	16,800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47	황토 벽돌조	성주읍 학산리 818-3	30	8,400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48	벽돌조	월항면 보암리 288	98.39	25,581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49	경량철골 구조	월항면 보암리 288	98.39	24,007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250	블록조	월항면 보암리 288-2	50	17,800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51	철파이프조	월항면 보암리 288-2	40	300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52	블록조	월항면 보암리 291-1	84.5	12,675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53	블록조	월항면 보암리 304	40	6,520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54	블록조	월항면 보암리 304	16	2,608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55	경량철골구조	월항면 보암리 913-2	320	5,008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56	경량철골구조	월항면 보암리 913-2	72	1,127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57	블록조	월항면 보암리 913-2	2.25	36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58	철파이프조	월항면 보암리 913-2	225	57,825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59	블록조	월항면 용각리 1308-5	193.8	1557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60	철골조	월항면 용각리 1308-5	185	1,486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61	철골조	월항면 용각리 1308-5	184	1,478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62	철골조	월항면 용각리 1308-5	178	1,430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63	블록조	월항면 용각리 1308-5	104.4	838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64	철골조	월항면 용각리 1308-5	101.2	813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65	블록조	월항면 용각리 1308-5	58.05	466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66	철골조	월항면 용각리 1308-5	18.5	149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267	블록조	월항면 용각리 1308-2	177	63,012	사업기간 중 ('25~'27년)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매입
	소계	16건	12,323	17,467,000		초전면 어울림복합타운	
268	답	초전면 대장리 689-1	504	92,000	2025년 9월	어울림복합타운 건립	매입
269	답	초전면 대장리 689-2	1,367	250,000	2025년 9월	어울림복합타운 건립	매입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270	답	초전면 대장리 689-3	1,269	232,000	2025년 9월	어울림복합타운 건립	매입
271	답	초전면 대장리 690-1	562	4,000	2025년 9월	어울림복합타운 건립	매입
272	답	초전면 대장리 690-4	932	129,000	2025년 9월	어울림복합타운 건립	매입
273	답	초전면 대장리 690-8	69	202,000	2025년 9월	어울림복합타운 건립	매입
274	답	초전면 대장리 690-11	847	193,000	2025년 9월	어울림복합타운 건립	매입
275	답	초전면 대장리 691-4	265	51,000	2025년 9월	어울림복합타운 건립	매입
276	답	초전면 대장리 688-3	2,096	455,000	2025년 9월	경관정비 사업	매입
277	대	초전면 대장리 584-19	159	36,000	2025년 9월	경관정비 사업	매입
278	대	초전면 대장리 584-20	122	27,000	2025년 9월	경관정비 사업	매입
279	답	초전면 대장리 584-24	13	1,000	2025년 9월	경관정비 사업	매입
280	대	초전면 대장리 585-4	73	15,000	2025년 9월	경관정비 사업	매입
281	답	초전면 대장리 585-5	175	36,000	2025년 9월	경관정비 사업	매입
282	답	초전면 대장리 585-7	56	4,000	2025년 9월	경관정비 사업	매입
283		초전면 대장리 689-1	3,814	15,740,000	2028년 12월	어울림복합타운 건립	신축
	총계	283건	479,585	24,677,857			

- 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매각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매각대상 수 량	과표 또는 평가액	매각 시기	매각 사유	매 수 희망자 성 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해	당	없	음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부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교환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단번호	재산표시				교환대상 수량	추 정 가 액	교 환 시 기	교 환 사 유	교 환 대상자	비고
	구분	지목	소재지	일단의 수량						
		해	당	없	음					
계	부지									
	건물	처분								
		취득								
	기타	처분								
		취득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부지가 5,000m²이고, 교환대상부지가 2,000m²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양여대상재산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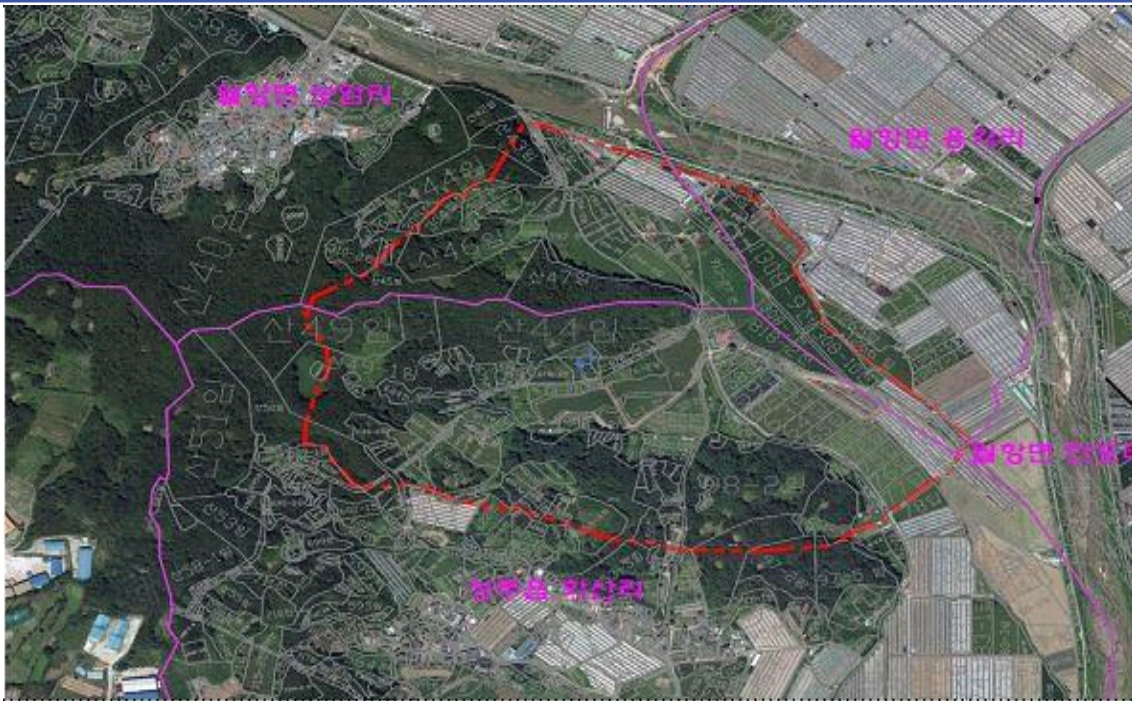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양여 대상 수량	과 표 또는 평가액	양여 시기	양여 사유 및 근거 법령	양수자	비고
	지목	소재지	일단의 수 량						
			해	당	없	음			
계	부지 건물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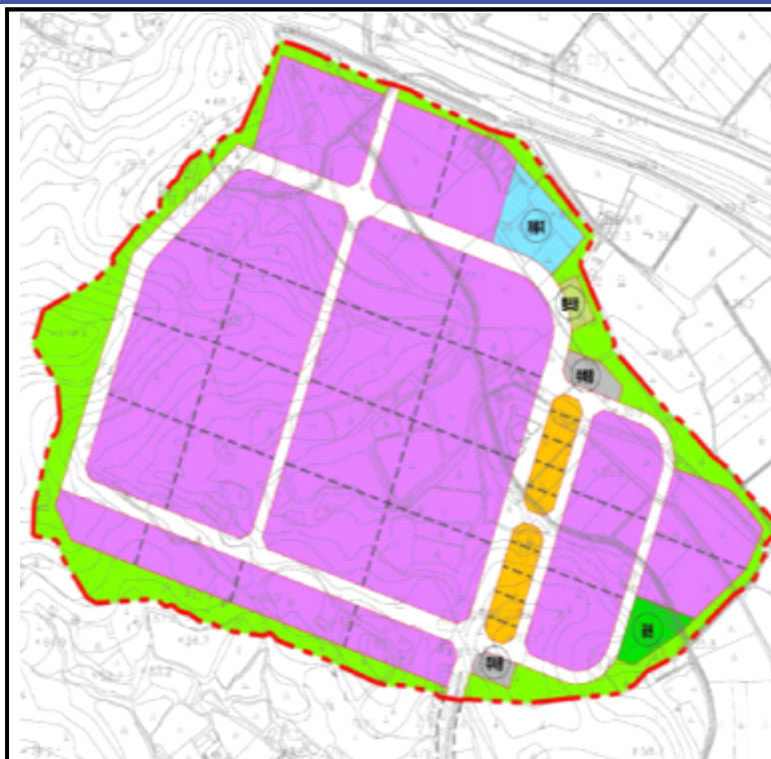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7-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성주3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취득 참고자료



위 치 도



구 분		면 적 (㎡)	구성비 (%)
합 계		464,259	100
산업시설용지		306,105	65.9
지원시설 용지		10,710	2.3
공 공 시 설 용 지	소계	147,444	31.8
	공원	4,017	0.9
	녹지	63,049	13.6
	도로	67,099	14.5
	주차장	3,984	0.9
	저류지	7,795	1.6
오폐수 펌프장		1,500	0.3

토지이용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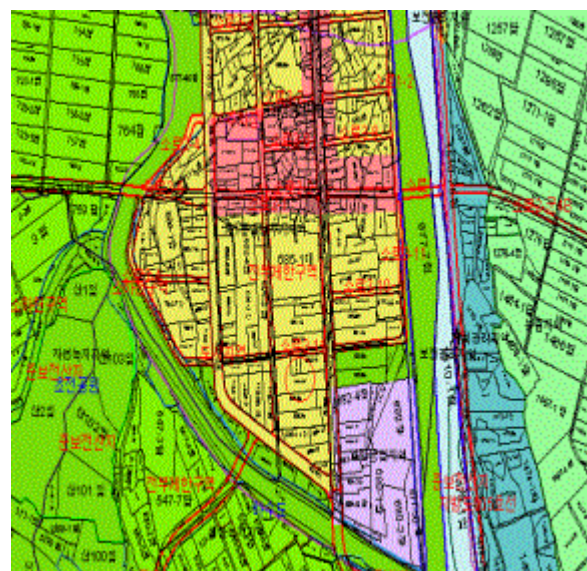
「초전면 어울림복합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 참고자료



위 치 도



계획평면도



토지이용계획도

「초전면 어울림복합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 참고자료



현장사진1 [대장리 688-3번지]



현장사진 2[대장리 585-7번지]

성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5년 6월 일
제출자 : 성주군수

1. 제안이유

○ 본 사업은 폐교부지를 활용한 공공승마시설(힐링승마체험장) 조성사업의 2단계 사업(힐링테마파크)으로 폐교부지와 주변지역을 활용하여 체험·휴양 등 관광자원의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군관리계획(용도지역)을 결정(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 치 : 성주군 선남면 용신리 산4-1번지 일원

나. 주요내용 :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관리 지역	소 계	33,197	-	33,197	100.0	
	보전관리지역	33,049	감) 33,049	-	-	
	계획관리지역	-	증) 33,197	33,197	100.0	
농림지역		148	감) 148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 도 지 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선남면 용신리 산4-1번지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3,049	100	· 폐교부지와 그 주변지역을 활용하여 체험·휴양 등 관 광자원의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 수 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2	선남면 용신리 1439-5번지 일원	농림지역		148		

다. 향후계획

- 2025. 06. :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입안 및 관련부서 협의
- 2025. 07. : 의회 의견청취
- 2025. 08. :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회 의견청취
- 2025. 09. : 용도지역 변경(안) 신청(道 도시계획과)
- 2025. 10. ~ 11. : 道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
- 2025. 12. : 道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용도지역 변경

3. 관련법령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

관 련 법 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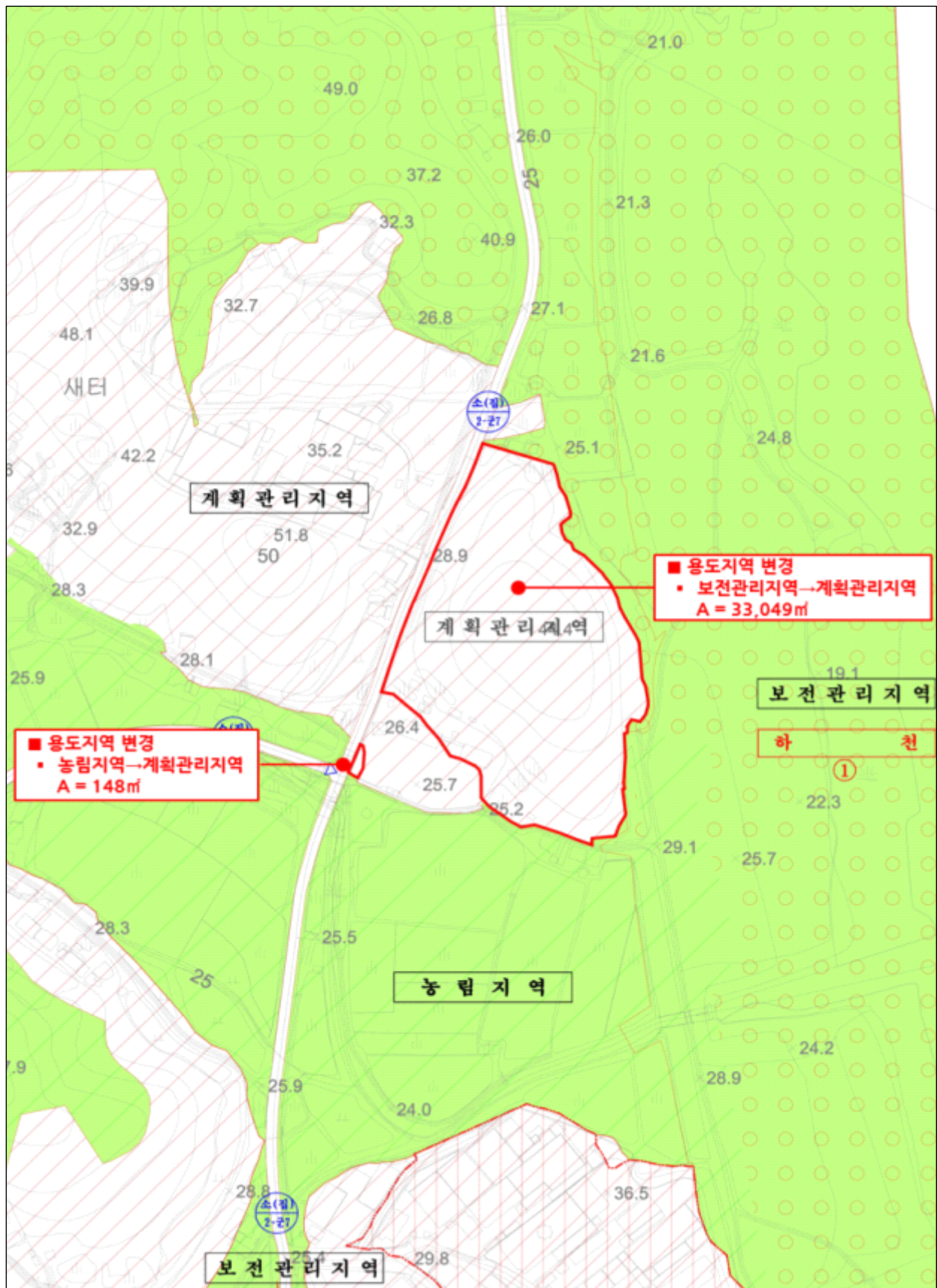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⑦법 제2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다만,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경우로서 해당 용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성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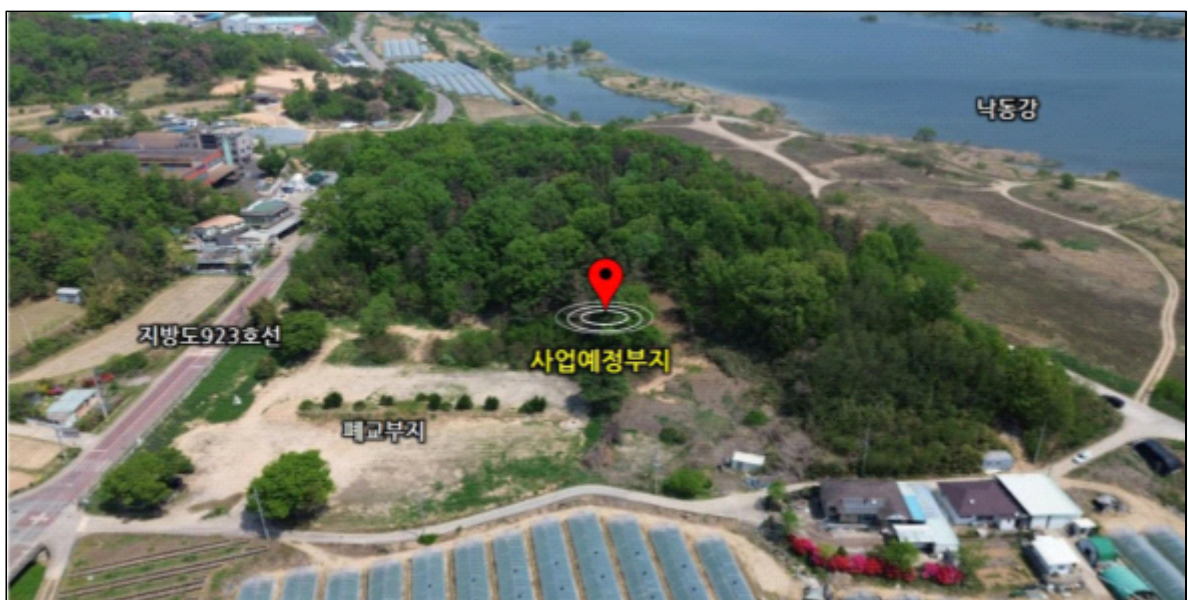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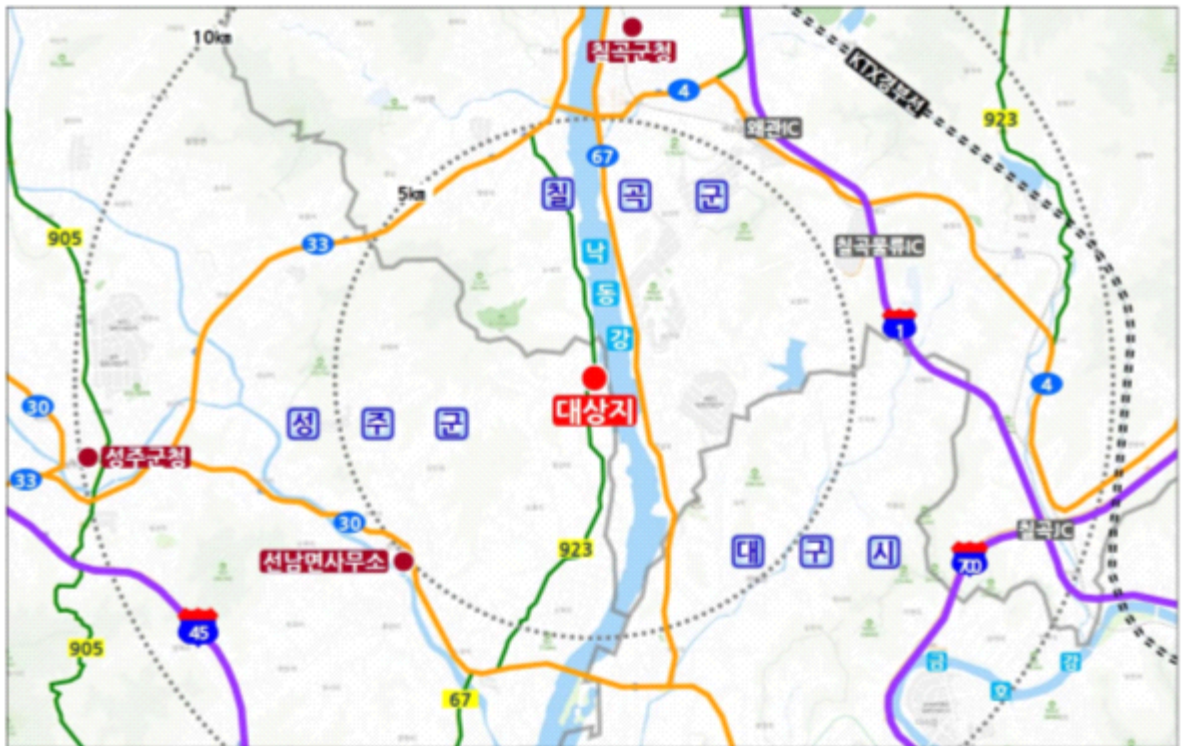


5. 사업계획(안)

○ 사업의 목적

- 관내 폐교부지와 그 주변지역을 활용하여 체험·휴양 등 관광자원의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통한 군민 여가문화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위치도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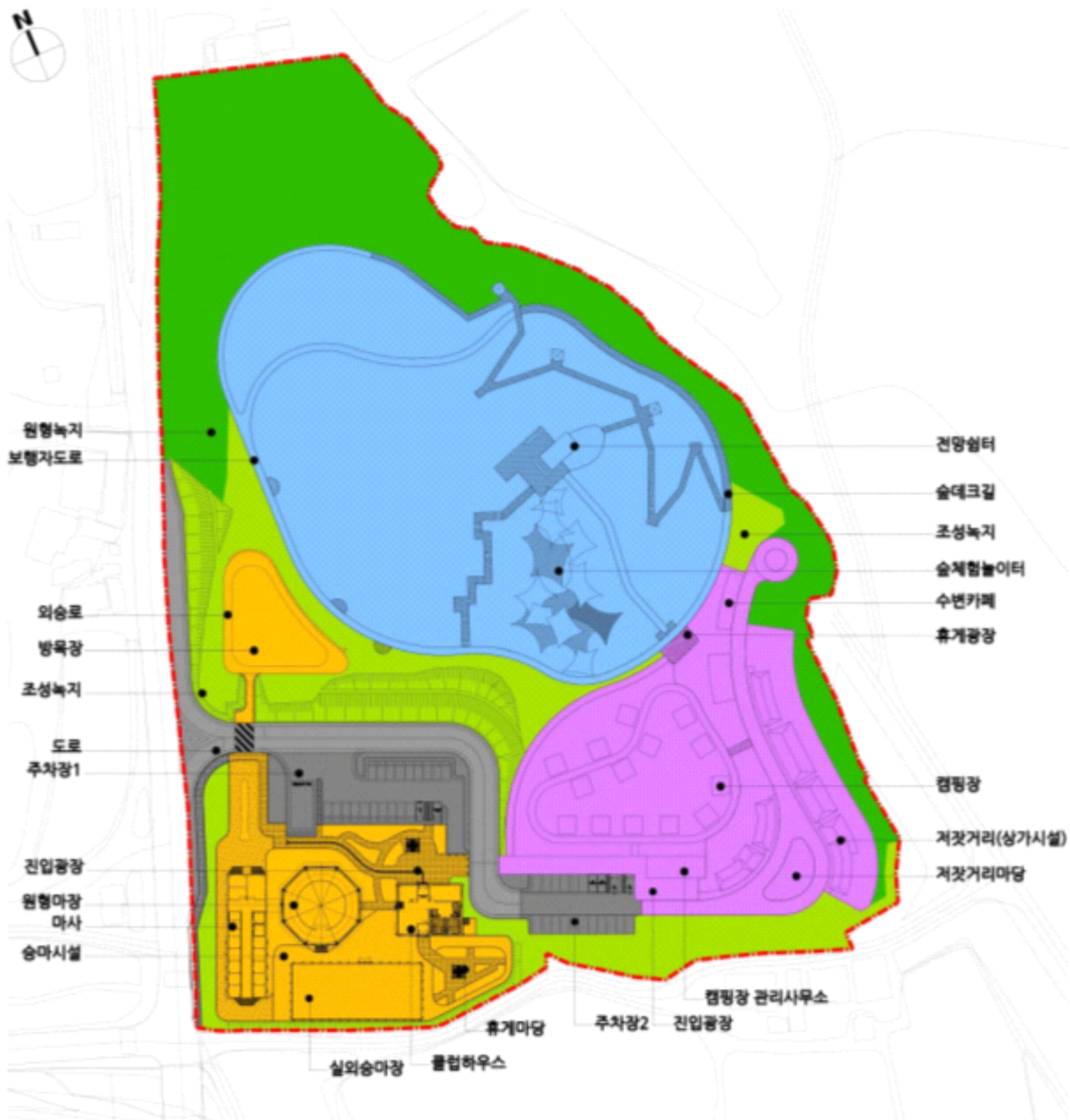


○ 기본구상

- 기존 지형 및 현황시설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훼손을 도모하고 구간별 자연스러운 연계를 고려한 동선계획 및 효율적인 공간계획 도모
- 기존식생, 계곡부 등의 지형적 특징을 잘 살려 질 높은 숲 생태환경 제공
- 이색적 체험 및 여가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구상을 통해 이용객들의 니즈 충족



○ 토지이용계획(안)



○ 시설배치계획(안)



벽진면문화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5년 6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7조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에 참여한 마을단체에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성주군의회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벽진면문화센터 운영·관리 사무

나.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진 시설물의 위탁
-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적절한 단체(추진위원회)에 위탁 필요

다. 위탁사무 내용

- 시설물 운영·관리 일체
- 이용객 관리 및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 민원사항 해소 등

라. 위탁시설 개요

사업명	시설명	대지	건축/ 연면적	소재지	주요시설	비고
벽진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벽진면 문화센터	5,598㎡	562.18/ 1,082.11㎡	벽진면 수촌리 824	헬스장, 샤워실, 건강관리실, 회의실, 다목적실 등	現수탁자 벽진면문화센터 운영위원회 (20.9.9.~25.9.8.) (갱신, 5년)

마. 위탁기간 : 위수탁 계약체결 후 개시일부터 3년 이내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성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수의계약

사. 소요예산 : 위탁료 없음

3. 참 고 사 항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다. 성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관리 조례 제7조, 제8조

라.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의 기준)

벽진면문화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벽진면문화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도시계획과 농촌활력팀

【관 련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성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관리 조례

제7조(시설물의 운영·관리)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시설물을 직접 운영·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이 있는 해당 지역의 읍장·면장에게 운영·관리하도록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성주군 물품관리 조례」 및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주체로서 필요에 따라 시설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8조(관리위탁 방법)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비영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2. 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해당지역의 읍장·면장의 추천을 받은 단체로 등록된 마을회(마을공동체), 협동조합.

제11조(위탁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을 한 경우 수탁시설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위탁료”라 한다)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는 시설이용료, 사용료 및 기타 부대 징수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관리는 위탁료로 충당하고 남은 사용료 등의 수익금의 일부 중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반드시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수익금으로 적립된 마을기금은 마을 공동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시설물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이용료는 위탁료와 상계처리 할 수 있다.

■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지침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5. 7. 2.(수) 10:3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제29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안 검토보고서

〈 의 안 목 록 〉	〈 제 출 자 〉
○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우의원외6인】
○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우의원외6인】
○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여노연의원외6인】
○ 성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성 주 군 수】
○ 성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성 주 군 수】
○ 벽진면문화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성 주 군 수】



성 주 군 의 회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지방의회 청렴노력도 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에 책임감 있게 임하도록 유도하며, 회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의 2)

- 출석정지 등 징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 질서유지 위반에 따른 공개회의 경고 사과의 경우도 의정비 감액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청렴도 향상 및 회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징계 또는 회의 중 질서위반 시 의정비 지급 제한 등 제재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의원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고, 회의 운영의 질서 확립을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시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 및 공무원의 부당한 여비 수령을 방지하고, 책임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안 제5조)

-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것에 더해 부정 수령액의 5배를 추가로 징수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 반영 및 여비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 여비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청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제도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개정 이유

국민권익위 「성주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 권고사항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2025. 1.)에 맞게 규칙을 개정하여 내실있는 출장제도 운영과 원활한 의정 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의 공정성 제고(안 제4조)

- 심사위원 공모 선정 및 임기 명시(임기 2년, 연임 1회 제한)

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안 제5조)

- 출국 45일 전 의회 홈페이지 게시

다.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안 제6조)

- 주민의견 수렴 기간 10일

라. 심사 후 계획 변경 시 심사위원회 재개최(안 제9조)

마. 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시 심사결과서 홈페이지 게시(안 제12조)

바. 징계 현황 공개(안 제15조)

3.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 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출장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행정안전부의 2025년 표준안을 반영하여, 심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 주민의견 수렴 절차 도입, 심사결과 및 징계현황 공개 등의 내용입니다.
-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도 합당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건전한 의정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규칙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재정안정화계정 사용 한도 변경 및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 운용의 합리성 및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 가. 재정안정화계정 사용 한도 변경(안 제4조)
- 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 관리 의무 명시(안 제5조)
- 다.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심의 포함(안 제7조)
- 라. 심의내역 및 금융기관 예치현황 관리 강화(안 제7조)
- 마. 심의위원회 별도 구성 및 운영(안 제8조 ~ 9조)
- 바.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12조)

(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 → (개정) 2030년 12월 31일까지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 운영의 합리성과 재정 건전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심의절차의 내실화, 위원회의 독립적 운영 근거 신설 등은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주요 조치입니다. 또한, 기금 사용한도를 90%에서 7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재정안정화 계정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며,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재정적 완충 역할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제안 근거

- 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
- 다.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 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항

2. 주요 사업

- 가. 「성주3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취득

1) 목적 및 용도

-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2) 사업기간

- 2025. 5월 ~ 2028. 12월

3) 소요예산

- 27,787,196천원(매입비 / 군비 100% / 특별회계)

4) 사업규모

- 토 지 ; 성주읍 학산리 51 외 233필지 464,259m²
- 지장물 : 성주읍 학산리 53 건물 외 3,003m²

5) 기준가격명세

(단위 : m² , 천원)

연번	구분	소재지	지적	기준가격	가점평가	비고
	소계		467,262	7,210,857	27,787,196	
1	토지	성주읍 학산리 51 외 233필지	464,259	6,816,609	27,183,812	취득대상 재산목록 참조
2	지장물	성주읍 학사리 53 건물 외	3,003	394,248	604,384	

6) 계약방법

- 협의취득 및 수용재결

7) 추진현황 및 계획

- 2025. 5.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
- 2025. 7.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상정
- 2025. 9. : 감정평가 실시
- 2025. 10. : 협의보상 및 보상금 지급
- 2026. 9. : 산업단지 조성공사 계약 및 착공
- 2028. 12. : 사업 준공 및 준공인가 고시

나. 「초전면 어울림복합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

1) 목적 및 용도

- 복합타운 건립 및 경관정비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정주민족도 향상

2) 사업기간

- 2024. 1월 ~ 2028. 12월

3) 소요 예산

- 20,923,404천 원(매입비 / 국비 50%, 도비 5%, 군비 45% / 일반회계)

4) 사업규모

- 토지 : 초전면 대장리 688-3 외 14필지 8,509m²
- 건물(신축) : 초전면 대장리 689-1 3,814m²

5) 기준가격명세

(단위 : m² , 천원)

구 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기준가격	가감정가	비고
토지	계	15필지		8,509	1,727,000	5,183,404	
1	초전면 대장리	689-1	답	504	92,000	292,320	복합타운 건립 (5,815m ²)
2	초전면 대장리	689-2	답	1,367	250,000	792,860	
3	초전면 대장리	689-3	답	1,269	232,000	736,020	
4	초전면 대장리	690-1	답	562	4,000	40,020	
5	초전면 대장리	690-4	답	932	129,000	393,400	
6	초전면 대장리	690-8	답	69	202,000	140,580	
7	초전면 대장리	690-11	답	847	193,000	577,840	
8	초전면 대장리	691-4	답	265	51,000	491,260	
9	초전면 대장리	688-3	답	2,096	455,000	1,215,680	경관정비 (2,694m ²)
10	초전면 대장리	584-19	대	159	36,000	159,000	
11	초전면 대장리	584-20	대	122	27,000	111,300	
12	초전면 대장리	584-24	답	13	1,000	85,400	
13	초전면 대장리	585-4	대	73	15,000	89,084	
14	초전면 대장리	585-5	답	175	36,000	7,540	
15	초전면 대장리	585-7	답	56	4,000	51,100	
건물	계	1필지		3,814	15,740,000		신축
1	초전면 대장리	689-1		3,814	15,740,000		복합타운 (지상3층)

6) 계약방법

- 토지-협의취득, 건물-공개경쟁입찰(설계공모)

7) 추진현황 및 계획

- 2025. 6.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
- 2025. 7.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상정
- 2025. 8. : 감정평가 및 보상
- 2025. 9. : 기본 및 실시설계(행정절차 이행)
- 2026. 11. : 공사착공
- 2028. 12. : 공사준공

3.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 「성주3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취득 >

- 본 안건은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성주읍 학산리 51번지 외 233필지에 해당하는 464,259㎡의 토지와, 학산리 53번지 건물 등 3,003㎡의 지상물을 277억 8,719만 6천 원에 매입하려는 내용입니다.
-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역 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주요 전략사업으로 평가되며, 계획된 예산 편성 및 보상 절차의 투명한 집행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경기 침체 및 미분양 우려를 고려할 때, 신규 산업단지 조성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며, 추진 시 미분양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초전면 어울림복합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 >

- 본 안건은 초전면 어울림복합타운 조성을 위해 초전면 대장리 688-3 외 14필지에 해당하는 8,509㎡의 토지와, 초전면 대장리 689-1에 3,814㎡ 건물을 209억 2,304만 4천에 매입·취득하려는 내용입니다.
- 초전면 어울림복합타운 조성사업은 지역 주민의 정주 만족도 향상과 생활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기본 방향은 타당합니다. 다만, 세부 사업계획과 시설 구성은 지역 수요와 기존 자원의 활용 가능성,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재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는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와 설명을 통해 계획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 제안이유

본 사업은 폐교부지를 활용한 공공승마시설(힐링승마체험장) 조성사업의 2단계 사업(힐링테마파크)으로 폐교부지와 주변지역을 활용하여 체험·휴양 등 관광자원의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군관리계획(용도지역)을 결정(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 치 : 성주군 선남면 용신리 산4-1번지 일원

나. 주요내용 :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관리 지역	소 계	33,197	-	33,197	100.0	
	보전관리지역	33,049	감) 33,049	-	-	
	계획관리지역	-	증) 33,197	33,197	100.0	
농림지역		148	감) 148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 도 지 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선남면 용신리 산4-1번지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3,049	100	· 폐교부지와 그 주변지역을 활용하여 체험·휴양 등 관광 광자원의 계획적 개발 및 수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 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2	선남면 용신리 1439-5번지 일원	농림지역		148		

다. 향후계획

- 2025. 06. :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입안 및 관련부서 협의
- 2025. 07. : 의회 의견청취
- 2025. 08. :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회 의견청취
- 2025. 09. : 용도지역 변경(안) 신청(道 도시계획과)
- 2025. 10. ~ 11. : 道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
- 2025. 12. : 道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용도지역 변경

3.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근거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선남면 용신리 산4-1번지 일원에 폐교부지를 활용하여 공공승마시설(힐링승마체험장) 조성을 위해기존 보전관리지역 33,049m²와 농림지역 148 m²이 각각 감축되어, 전체 33,197m²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해당 부지는 이미 일정 부분 개발되어 있으며, 접근성과 기존 도로 및 상수도 등 인프라 연계 가능성도 높아,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이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벽진면문화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7조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에 참여한 마을단체에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성주군의회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벽진면문화센터 운영·관리 사무

나.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진 시설물의 위탁
-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적절한 단체(추진위원회)에 위탁 필요

다. 위탁사무 내용

- 시설물 운영·관리 일체
- 이용객 관리 및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 민원사항 해소 등

라. 위탁시설 개요

사업명	시설명	대지	건 축/ 연면적	소재지	주요시설	비고
벽진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벽진면 문화센터	5,598㎡	562.18/ 1,082.11㎡	벽진면 수촌리 824	헬스장, 샤워실, 건강관리실, 회의실, 다목적실 등	現수탁자 벽진면문화센터 운영위원회 (20.9.9.~25.9.8.) (갱신, 5년)

마. 위탁기간 : 위수탁 계약체결 후 개시일부터 3년 이내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성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수의계약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5,817천원(기간제근로자보수)

- 급여	80,240원*1명*250일	20,060천원
- 주휴수당	80,240원*1명*52주	4,173천원
- 명절휴가비	150,000원*2회	300천원
- 법정공휴일유급휴일수당	80,240원*1명*16일	1,284천원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성주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벽진면문화센터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주민자치 활성화와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타당한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현재까지 해당 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온 운영위원회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재위탁하는 것은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